

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가이드

■ 현장실습 제도 운영 안내



“코리아텍 현장실습 제도는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”

■ 주요내용 (교육부『현장실습 운영 규정』, 및 고용노동부『일경험수련생 가이드라인』中)



협약체결

학교와 실습기관은 **현장실습 운영**에 관한 사항을 실습 시작 전 **협약**을 체결하고 진행해야 합니다.(학교, 학생, 실습기관 간 협약)



실습생 신분

실습생은 **교육·훈련**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업무를 경험하는 “**학생신분**”으로,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**근로자와 구별**됩니다.



실습생 안전

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**상해보험 가입(학교)** 및 **안전교육, 성희롱 예방교육**을 실시하며,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및 학교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.



멘토지정

실습기관별로 **담당자(멘토)**를 지정하고 실습학생을 **직무지도** 및 **관리·감독**해야 합니다.



실습직무

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·기술·태도를 습득 할 수 있도록 **전공과 관련된 실무 실습과정**으로 운영하며, 위험하거나 유해한 훈련은 배제되어야 합니다.



실습시간

휴게시간을 제외하고 **1일 8시간, 1주 40시간**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(단, 학생의 동의 하에 주당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)



휴가제도

실습기간 1개월 이상 만근 시 **1개월 기준 1일**의 **휴가**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.